

서울특별시 강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21년 6월 22일

미래·복지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: 2021년 5월 26일

나. 제출자: 송순호 의원 외 7명

다. 회부일자: 2021년 6월 2일

라. 상정일자: 제28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

미래·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 상정·의결(2021.6.15.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: 송순호 의원)

가. 제안이유

「국민건강증진법」에서 위임한 금주구역 지정 등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1)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(안 제1조)
- 2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(안 제2조)
- 3)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3조)
- 4) 금주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4조)
- 5) 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5조)
- 6)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관련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6조)
- 7) 음주폐해로부터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7조)
- 8) 민간 참여 유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8조)
- 9) 봉사활동 단체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9조)
- 10) 시행규칙에 대하여 근거를 규정함(안 제10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3조, 제8조, 제8조의4

나. 예산조치: 2021년 본예산 편성 (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)

다. 해당부서: 의약과

라. 기 타: 입법예고(2021. 5. 27. ~ 6. 1.) 결과 의견없음

4. 전문위원 검토의견

(전문위원: 서선옥)

- 본 조례안은 음주로 인한 각종 폐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교육과 홍보를 통해 강서구의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
- 주요내용은
 - 안 제1조에서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하였으며,
 - 안 제2조 용어 정의에서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각종 용어를 정의하였으며
 -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로 구민에게 음주로 인한 폐해에 대해 알리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였음.
 - 안 제4조는 금주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8조의4의 위임에 따라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관내 일정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, 금주구역을 지정하였을 경우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금주구역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하고 그 장소와 범위를 구보에 고시하도록 함.
 - ※ 금주구역 위반 시 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34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·징수할 수 있음.
 - 안 제5조는 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에 관한 것으로
 - 강서구 내에서 발행되는 신문·잡지 및 방송·홍보물 등에 대하여 직·간접적으로 과도한 음주를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,
 -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최되는 행사에 주류를 제공하거나 주류 홍보 등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도록 권고하여야 함.

- 안 제6조는 교육에 대한 지원으로 민간단체의 절주교육과 학교에서 실시하는 음주예방 교육에 대해 지원하거나 직접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,
 - 안 제7조에는 구민을 음주폐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
 - 알코올 사용 의존자에 대한 선별, 상담, 치료 및 재활서비스 제공 사업
 - 알코올 사용 의존자에 의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자를 위한 보호서비스 연계 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으며, 그 사업의 시행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음.
 - 안 제8조는 민간의 참여유도에 관한 사항으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공청회,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, 시민단체 기업 등이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과 관련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민·관 협력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였음.
 - 안 제9조는 봉사활동 단체 등에 대한 지원으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활동을 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그 활동을 지원 할 수 있도록 하고
 - 안 제10조에서는 시행규칙에 대해 규정하였으며,
 - 부칙에서 조례의 시행일은 2021년 6월 30일부터로 하였음.
- 우리나라의 알코올 관련 사망자는 한해 4,747명으로 매일 13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조사¹⁾되었으며,
- 주취폭력, 자살 등 주요 사건·사고의 원인으로 사회 안전의 위협이 되고,
 - 의료비와 생산성 손실액 등 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9조 4천억원²⁾에 달함.

1) 출처: 보건복지부 “음주폐해예방 실행계획”(2018.11.)

2) ‘15년 건강보험정책연구원

- 또한 공공장소에서 음주로 인한 피해의 경험³⁾이 많으며, 이로 인해 공공장소의 음주 제한에 대한 많은 요청이 있는 상황임.
 -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음주폐해예방을 위한 주요 실행과제로 공공기관, 아동·청소년 시설에 대한 금주구역 지정 및 광고 환경 변화를 반영한 주류광고 규제 강화 등이 논의되었으며,
-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「국민건강증진법」 개정안이 2020년 12월 통과되었음.
 - 공포 후 6개월인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되며, 주요내용은
 -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던 금주구역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,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일정한 구역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주구역 내 음주자에 대하여 과태료(10만원 이하)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,
 - 그 밖에도 주류광고의 제한·금지 특례, 절주문화 조성 및 알코올 남용·의존 관리 등 음주폐해를 예방하기 위한 내용임.
- 이와 같은 내용을 반영하여 금주 구역 지정 및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정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의 제정이 필요성이 있으며,
 - 조례의 시행일 역시 개정된 「국민건강증진법」 이 발효되는 6월 30일로 일치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

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6. 토론요지: 생략

3) 93.2%가 타인의 음주로 피해를 받았다고 인식하였으며, 66.7%가 폭력행사로 두려움을 경험

7. 심사결과: 수정가결

8. 수정안의 요지

가. 수정이유

- 금주구역 지정으로 인해 주변 상권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장소를 구체화 할 필요성이 있어 금주구역 지정 장소를 각 호로 신설함.

나. 수정내용

- 구청장이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내 일정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·변경 할 수 있도록 한 것에서 금주구역을 구체화 할 수 있도록 각 호를 신설함.

- 각 호의 내용

1. 도시공원(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도시공원을 말한다) 중 어린이 공원
2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

붙임 1) 수정안 및 수정안 조문 대비표 1부.

2) 관계 법령 1부.

〈 수정안 〉

서울특별시 강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강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내 일정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하거나 지정된 금주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”를 “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”으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도시공원(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도시공원을 말한다) 중 어린이공원
2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금주구역의 지정 변경 등)</p> <p>① 구청장은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「국민건강증진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8조의4에 따라 <u>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내 일정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하거나 지정된 금주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.</u></p> <p><신 설></p> <p><신 설></p> <p>② ~ ④ (생략)</p>	<p>제4조(금주구역의 지정 변경 등)</p> <p>① ----- ----- ----- ----- <u>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1. <u>도시공원(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도시공원을 말한다) 중 어린이공원</u></p> <p>2. <u>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</u></p> <p>② ~ ④ (현행과 같음)</p>

□ 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3조

제3조(책임)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.

②모든 국민은 자신 및 가족의 건강을 증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, 타인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

□ 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8조

제8조(금연 및 절주운동등)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담배의 직접 흡연 또는 간접흡연과 과도한 음주가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·홍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06. 9. 27.>

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금연 및 절주에 관한 조사·연구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.

③ 삭제 <2011. 6. 7.>

④ 「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」에 의하여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주류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과도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과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 3. 2., 20. 12. 29.>

⑤ 삭제 <2002. 1. 19.>

⑥제4항에 따른 경고문구의 표시내용,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

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02. 1. 19., 2007. 12. 14., 2008. 2. 29., 2010. 1. 18., 2011. 6. 7.>

□ 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8조의4

- 제8조의4(금주구역 지정) ① 지방자치단체는 음주폐해 예방과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는 음주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③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금주구역 안내표지의 설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20. 12. 29.]

[시행일 : 2021. 6. 30.] 제8조의4